#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3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 권칠승·박홍근·고영인

이상헌 · 홍정민 · 권인숙

맹성규・박 정・김영배

김정호 · 한병도 · 신정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바,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반면,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 하거나 정지하는바,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 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호·제8조의2·제66조의3 신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5조 또는 제66조 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인 면 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취 돼	-11 -71 A1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제8조(결격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료인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lt;신 설&gt;</u>	제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
	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을

<신 설>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